

# 인권도 투표권도 기본권도 없이... 사흘에 1명꼴 사라지는 청소년 '소리없는 아우성'... 기성세대 언제까지 침묵하나

**답이 없는 한국 !**  
국민청원에서 답 찾다

〈중〉 청소년이 희망이다

만 18세 이하 선거법 개정 청원 학생 인권조례 시행 지역 '네 곳' 교과과정에 '노동법'도 추가해야



매년 116명의 아이들이 세상과 이별을 고한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3일에 1명 꼴이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학생 자살사망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총 556명의 청소년이 자살한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인권도 투표권도 기본권도 없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엔 '힘'이 없다.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이들의 이익을 대변해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자주 소외당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때이다.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만약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교육정책들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도록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한 고3학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소년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3만4330명의 사람들이 지지를 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병역법,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법령에서 성년의 기준은 만 18세다.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는데 투표권만 없다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선거 연령이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 독일, 뉴질랜드 등은 만 18세

에 선거권이 주어진다. 오스트리아는 만 16세다. 보수적인 일본조차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췄다.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 18세 이하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최봉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타국의 예에 비취 봤을 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우리도 그에 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투표권 연령 기준을 낮추는 데 동의했다.

선거권 연령 제한 헌법소원은 2018년 3월 기준 총 7차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에서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만 변호사는 "선거권은 민주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어 입법 반영이 안 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

입법 자체에 당사자가 아닌 성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학생 인권조례가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두발·복장 단속, 강제 야자(야간 자율학습) 등은 학생들의 자율권 침해 그 자체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외에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침해받고 있는 권리들은 많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 인권' 관련 글만 660개가 넘는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학교는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한다.

지난해 1월 13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흥사단에서 '학생 청소년 인권침해 증언대회'가 열렸다. 발언자로 나선 청소년 김민재(가명·17) 군은 학교의 반인권적인 문화 때문에 학교를 그만뒀다고 고백했다.

김 군은 수업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

다고 말하자 교사로부터 '조금씩 써서 말려라', '쪽팔리지도 않냐', '그것도 못 참니?'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결국 허락을 받지 못하고 화장실을 간 김 군은 선생님에게 걸려 교장실에서 몇 시간 동안 반성문을 써야 했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 학기술부에 '학생인권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2013년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 인권법안'은 2016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표한 '2017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학생 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전라북도 단 네 곳뿐이다. 하지만 조례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 교권 조례만 제정된 곳도 있다. 인천과 충남이다.

민변 서채만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법 자체가 당사자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권리주체로서의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동·청소년을 규율과 보호의 대상의 관점에서 접근해 법제가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당사국으로서 아동·청소년 통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태동 이호진 변호사는 "청소년 인권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한다"며 "청소년 인권법이 기본법으로 제정되면 인권 보호와 관련된 제대로 된 보호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포함해야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학교 다닐 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회사가 폐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법을 추가해야 한다는 글도 440여 건 게재됐다.

지난해 12월 11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편의점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40원 상당의 비닐봉지 2장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르바이트생 박지원(가명·19) 씨가 편의점주에게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점주가 박 양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비단 김 양만의 일일까. 여성가족부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25.8%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또 전체 조사 대상 1만 5646명 중 1만 2751명(75.1%) 즉, 4명 중 3명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공약집에서 노동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알바존중법'을 도입해 청소년기부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들은 노동 인권교육을 '시민교육'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해 청소년 시기부터 가르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美 금리인상때 '환율 상승·자본 유출' 예상

미국의 금리인상 후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과 한국의 정책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미국이 금년 내 금리인상, 통화환수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양적 완화정책을 중단하고 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주요국이 금리를 인상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돼 온 글로벌 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내다봤다. 신흥국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는 추세라 향후 한국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분석이다.

특히 미국 금리 인상이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94년 미국 금리인상 후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고, 2004년 미국 금리인상 후에는 2008년 신흥국 유동성 위기가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미국 금리인상 후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1997년과 2008년 두 번의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에서는 미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영향 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연이 개방경제 신케인 지언 모형을 이용해 미국의 금리인상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원·엔 환율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위기사 소요 외환보유액 추정〉

항목	금액(백만달러)	소요비율(%)	소요액(백만달러)
수입(2017년)	478,410	25	119,603
유동외채(2017.3분기말, 추정)	185,968	100	185,968
외국인주식채권투자(2018.2.12)	646,221	33	213,253
위기사 소요외환보유액			518,823
외환보유액(2018.1월말)			395,754
부족분			123,069

## “청소년고용정책, 세분화해야”

교육 수준	결혼·출산
자산·소득	연령대

### 만15세~29세 청년 묶어 정책 추진 근본적 문제 해결로 노동시장 개선

최근 정부가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청년고용정책을 청년층 내부의 특성과 유형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정부는 만15세~29세 이하를 청년층으로 묶어 이에 대한 통계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연령이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리뷰 3월호'에 수록된 '청년고용의 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청년고용정책의 구체적 목표 및 대상을 설정하고 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연령 외 다양한 청년유형이 존재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제 청년은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교육수준별, 자산·소득수준별, 고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취업유무와 고용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극심한 실업난에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겨우 넘어섰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학생이 채용 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형태별로, 또한 결혼·출산·육아의 과정을 겪었는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보고서는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지금처럼 연령대를 절대적 기준으로 한 전체 위에 추진되는 청년고용정책은 청년연령대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일시적 고용사정과 삶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임시적·단기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과 청년실업 문제의 본질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음을 인지하면, 청년고용 문제는 이에서 비롯한 노동시장의 왜곡과 격차 완화에 있어 근본적 문제가 해결돼야 개선될 여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고용사정 개선에도 청년층의 고용사정만 악화일로를 견고 있음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반시장적 정책이라 하더라도 단기적·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보완정책으로서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